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2021. 3. 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목 차

❖ 공청회 개최 계획	1
-------------------	---

❖ 진술 의견

◆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5
◆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3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35
◆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45

공청회 개최 계획

■ 목 적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중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배달 업무 종사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수업무의 범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국가·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에 참고하기 위함.

※ 관련법안

- 2108589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종성의원등11인)
- 2107345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이해식의원등10인)
- 2107079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 2105637 필수노동자 보호법안(김영배의원 등 17인)
- 2104989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 3. 12.(금) 14:00

※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 소 :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본관 622호)

■ 진술인 명단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 진 술 의 건

권 순 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필수노동자 관련 국회공청회 발표문
2021년 3월 12일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권순원

I. 필수노동자 보호 입법의 필요성



필수노동자 보호입법의 필요성

- ❖ 2020년 초부터 확산된 COVID-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각국은 방역을 위한 봉쇄(lock down)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
 -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위험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 최소한의 일상 및 경제 활동 유지를 위한 주요 업무는 지속 수행이 불가피
- ❖ 특히, 국민의 생명·건강 및 신체 보호와 관련된 보건의료나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그 동안 '주변 업무'로 간주되어 중요하지 않은 범주로 취급되던 택배·배달·환경미화·콜센터 업무 등이 비대면 환경하의 생활유지를 위한 핵심 업무로 주목됨.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의존이 크게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취약한 근로여건 개선과 감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감염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사회안정과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됨.
- ❖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 세계 각국은 소위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설계·시행 중. 현재는 주로 소득지원(미국·캐나다 등)에 그치고 있으나 종합적인 보호·지원 대책을 모색하는 추세. 하지만 위험의 확산 속도와 규모에 비해 관련 대책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지부진 한 상황임(영국·한국 등).
 - 따라서, 현재 진행형 팬데믹과 미래의 미증유 재난 상황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또는 필수업무종사자)를 분류·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입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필수노동자 개념 1

'필수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핵심노동자(Essential worker)**,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 OECD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락다운(lockdown) 상황에서도, 병원, 식품판매업, 건물관리, 농업 등 원격업무가 불가하고 필수적인 업종의 종사자를 최전방 종사자(Frontline worker)로 지칭하는 한편, → (원격업무 불가 + 필수업종)
 - 경제활동에 핵심적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기에 처우가 열악한 식품가공 및 판매, 배달, 보건의료업 등을 감염병 국면에서의 필수(essential)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핵심종사자(Key worker)로 정의함
- ❖ 그 밖에 여러 국제기구 및 국가에서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대면서비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경우 '최전방노동자(접점노동자, Frontline worker)'로(ILO, 영국 등), 수행 업무의 경제·사회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로(미국, EU 등) 지칭하는 경향. 영국은 최전방노동자(접점노동자, Frontline worker) 및 핵심 종사자(Key -, Critical -) 개념을 모두 사용



필수노동자 개념 2

‘필수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 최전방노동자(Frontline worker)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0.12.14.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서 “필수업무”를 정의.

-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의. 이는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 개념과 유사

❖ 한편, 위 대책은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감염위험’을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대면업무’라는 특성해 더해 감염병 국면이라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필수업무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내포. 요컨대 필수업무의 지정 요건은 상황과 특성이 결합되어야 필요충분. → **대면업무(원격업무 불가능) + 필수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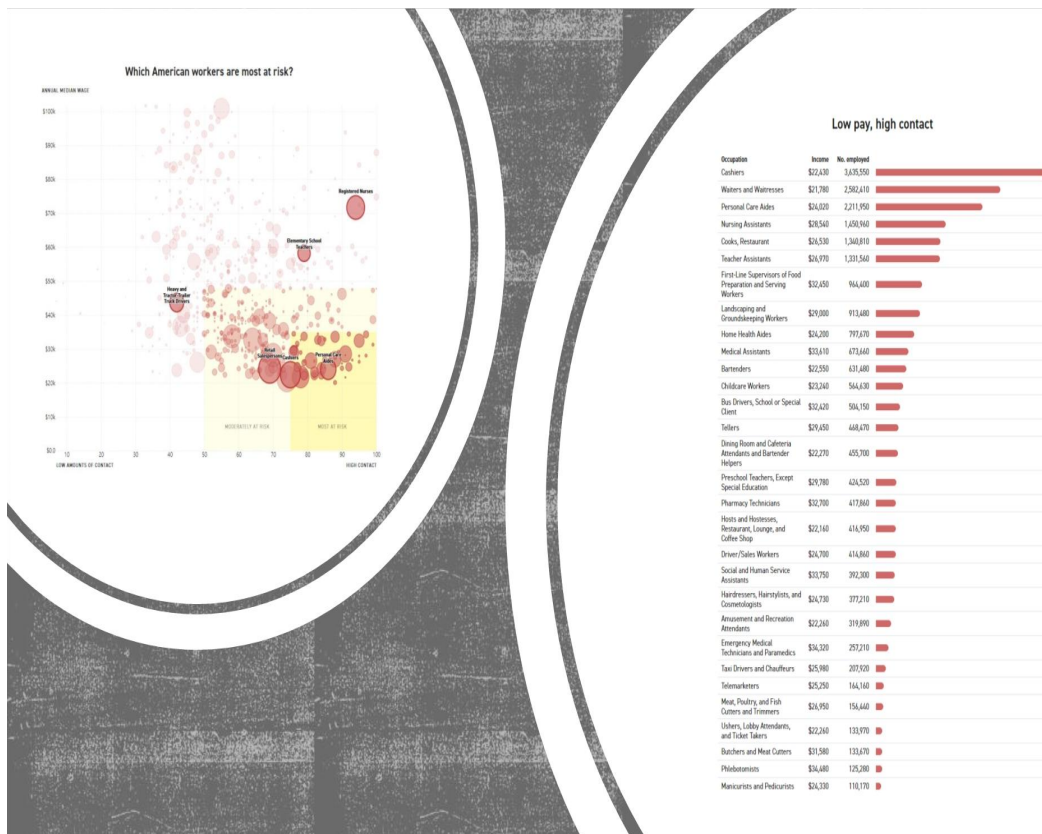
II. 필수노동자의 개념 및 관련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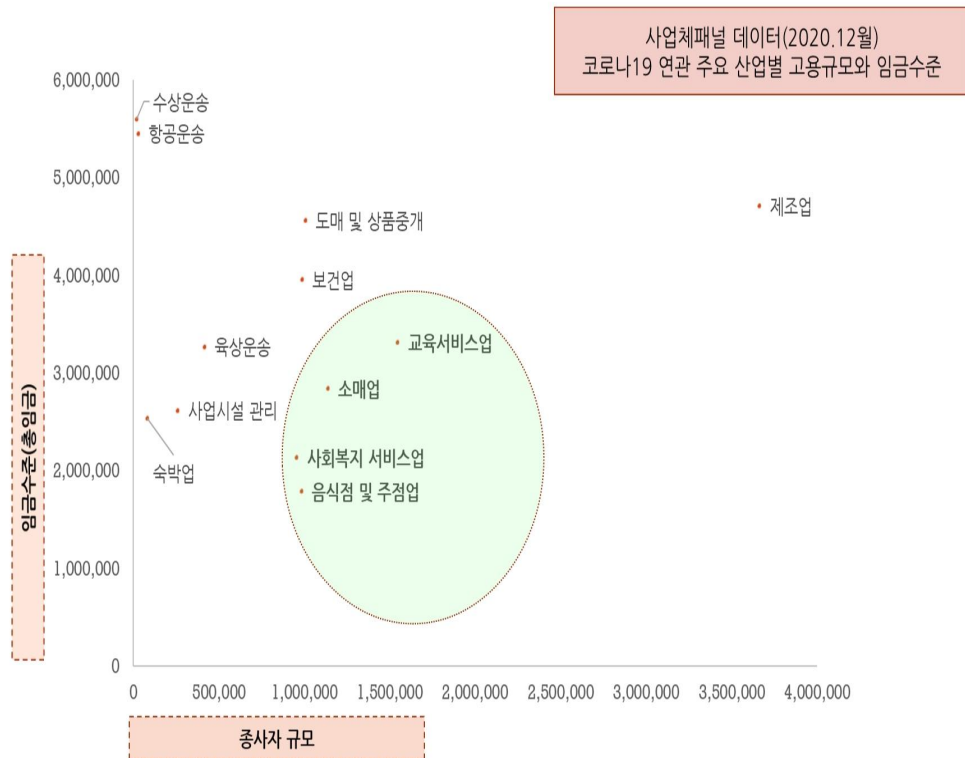


필수노동자 개념 관련 연구사례 1

Who is most at risk in the coronavirus crisis (출처: POLITICO, By BEATRICE JIN & ANDREW MCGILL, 03/21/2020)

- ❖ 위 연구 사례는 미국 노동부 임금데이터와 O*Net의 근로조건서베이 데이터를 교차해 분석함.
- ❖ 감염병 위험 국면에서 원격 수행이 불가능하고 대고객 접촉이 불가피한 업무로서 저임금 범주에 속하는 종사자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범주**. → 이들의 노동과정 보호와 소득보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위 분석에 기초하면 **계산원, 웨이터 & 웨이트리스, 개인개호 및 보조, 간호(보조)** 등이 대고객 접점업무로서 저임금 범주에 속함.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으로 분류됨.





필수노동자 개념 관련 연구사례 2

[Covid-19 pandemic shines a light on a new kind of class divide and its inequalities](#) (출처: The Guardian, By ROBERT REICH, 26/Apr/2020) →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

❖ Robert Reich는 코로나 국면에서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계급을 네 범주로 구분.

- 1 계급은 '원격 근무자'(The Remotes). 전체의 약 35%. 전문·관리·기술 인력으로 노트북 등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하며,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범주. 급여 손실 없음.
- 2 계급은 '필수업무 종사자'(The Essentials). 약 30%. 간호사, 재택 간호·육아 노동자, 식료품 가 공종사자, 트럭 운전기사, 창고·운수 노동자, 약국 직원, 위생 관련 노동자, 경찰관·소방관·군인 등. **일자리는 유지하지만 대면업무가 불가피해 감염 위험 높음.**
- 3 계급은 '임금 없는 노동자'(The Unpaid). 곧 전체의 25%까지 증가 추정. 일시해고자나 무급휴 직자. "이 계급은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고 집세를 내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하거 나 없어 위험.
- 4 계급은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 감옥 제소자 및 수용소 수감자,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등. 보호부재의 범주.

필수노동자 개념 관련 연구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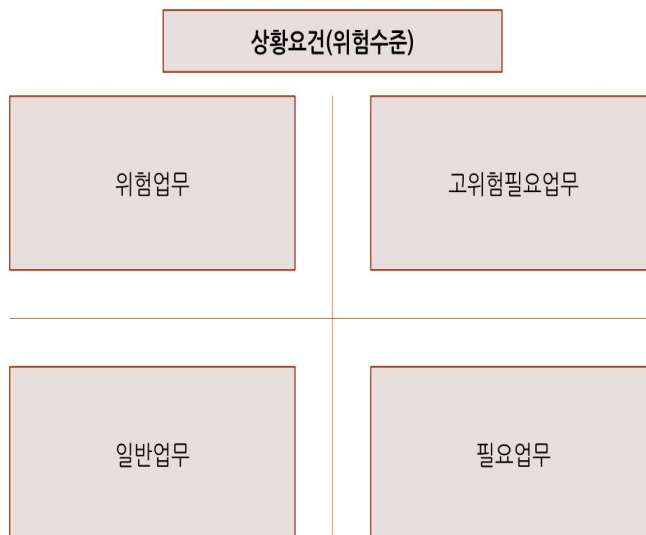
What we owe essential workers (출처: The Hill, By THOMAS KOCHAN & BARBARA DYER, May 01, 2020) →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 제시

❖ Thomas Kochan & Barbara Dyer는 'essential workers'에 대한 '필수보호조치' 7가지를 제안.

- 1. 필요 안전 대응책이 수반되어야 함.
- 2. 근로조건 형성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발언권(voice)이 보장되어야 하며, 작업안전을 둘러싼 분쟁해소의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3. 종사자 질병으로 인한 업무 결원을 보충할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
- 4. 이 범주 노동자들에게 "영웅급여 hero pay"(위험수당) 제공.
- 5. 직무상 발생한 질병시 유급병가와 가족휴가 의무화
- 6. 노동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종사자 장애나 후유 등 위험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 7.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이민자나 불법체류자(undocumented)가 추방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조치



필수노동자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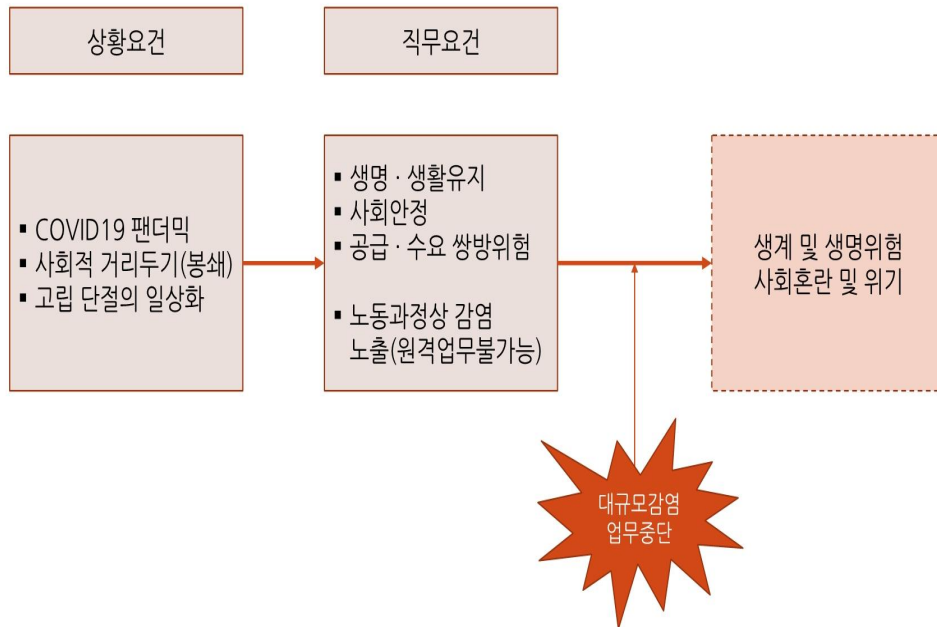


-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필수노동자는 **상황적 요건과 직무특성이 결합되어** 정의됨.
- 따라서 **위험의 상황요건이 무엇인지** 정의되어야 하며, 이와 연관된 **직무요건**이 분석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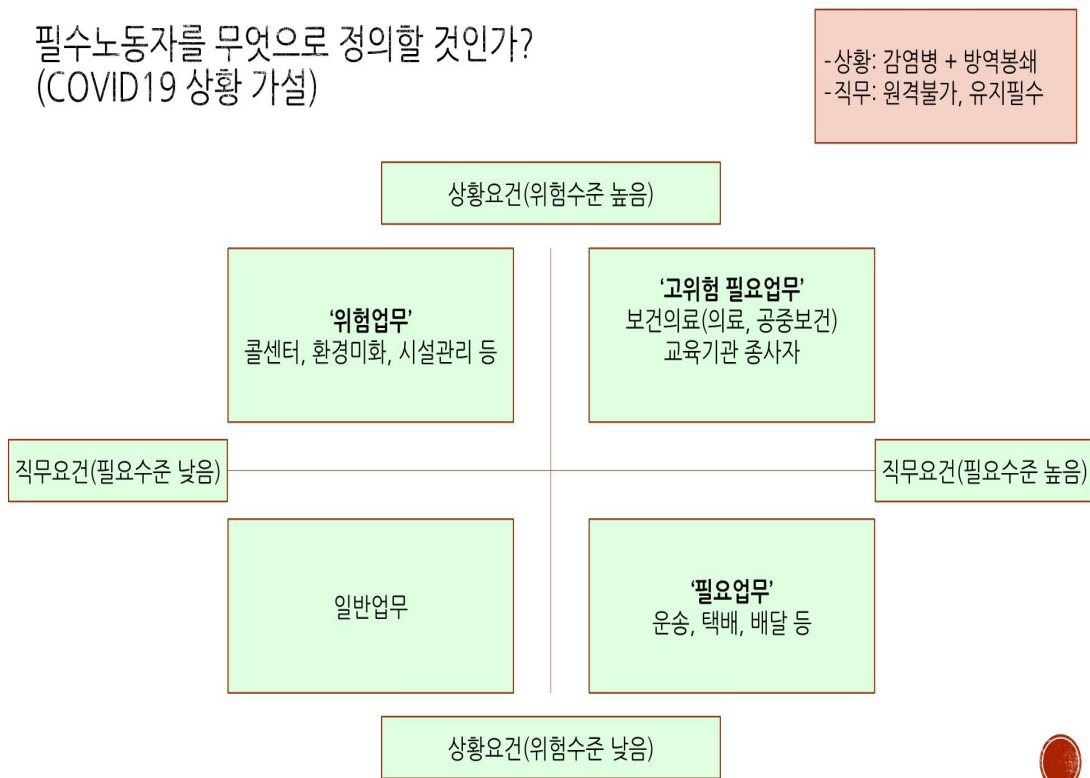
직무요건(필요수준)



필수노동자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가설)



필수노동자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COVID19 상황 가설)



필수노동자: 정책사례 1. 미국

❖ '지역 집행 - 주정부 관리 - 연방정부 지원'의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는 지침을 통해 핵심종사자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법률을 통해 보건 및 재정상 어려움에 처한 공공·민간 분야에 대해 재정지원 기금 조성·제공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자영업자, 기업 및 비영리단체, 주정부 등에 대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이 포함된 CARES Act '20.3.27. 시행.

■ Cares Act의 지원 일부 종류에 따라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 이를 포함한 HEROES act는 5월 하원 통과, 상원 부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원 법안 마련 중)

❖ 주정부는 연방 지침에 따르거나 자체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요산업에 대한 소득지원을 실시

「Heroes Act」 내 코로나19 관련 필수 분야

필수분야	필수분야
1 초기 대응자 업무(경찰, 소방 등)	18 창고 저장, 분배 업무
2 일원 환자 의료 서비스	19 청소 및 건물 관리 업무(수위, 수리 및 유지보수 등)
3 외래 환자 의료 서비스	20 폐기물 처리 업무(폐기물의 수집·운송·처리 등)
4 조제 업무	21 정보서비스 업무(뉴스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등)
5 의료 검사와 진단 서비스 수행 시설 업무	22 정부(주, 지역, 부족)의 업무 중 필수 업무
6 가정 공동체 기반 업무(가정 의료, 재활 간호 등)	23 학교 교육, 영양 및 기타 업무
7 코로나 19 관련 생의학 연구	24 세탁 업무(세탁 서비스 회사 업무 등)
8 행동 건강 업무(정신 의료 업무 등)	25 선거 업무
9 간호, 거주 간호 업무	26 유해 물질(코로나19 영향 등)의 관리, 대응 등 업무
10 가족 돌봄 업무(보육 서비스 등)	27 소독 업무
11 사회복지 업무(생물적 피해자 보호 등)	28 임상 연구, 개발, 시험 업무
12 공중 보건 업무(대학 활동, 예방·대응 업무)	29 장애 업무(장애, 퇴직, 재정, 관련 업무)
13 부족(원주민) 필수 서비스	30 물리치료, 언어 병리학 및 기타 치료 업무
14 식료품점 및 집화점 관련	31 치과 업무
15 식당 업무(무점, 배달 포함)	32 미국 우편 서비스 근로자 업무
16 식량 생산 업무(농업, 어업, 양돈, 축산업, 가공업 등)	33 호텔 및 숙박 시설 업무(자가 격리에 활용)
17 수송 업무(항공 교통, 상용 운송 등)	34 통신화선과 장비의 설치·수리 업무



필수노동자: 정책사례 2. 캐나다

❖ (캐나다) 정부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10개 필수종사자 분야를 발표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프로그램(EWSP; Essential worker Support Program)을 통해 필수종사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실시

■ 필수업무 분야에서 16주간 190시간 이상 종사하면서, 월소득 3,500달러(한화 약 310만원) 이하인 경우, 종사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600~1500달러(한화 약 53~133만원) 지원(소득 및 종사시간이 길수록 지원금 수준이 높아지는 구조)

❖ 주별로 세부적인 지원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재원의 25%를 주 정부에서 부담하는 구조

[캐나다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필수 종사자 분야]

필수 분야	필수분야
1 에너지, 발전 등	6 수자원 관리
2 정보통신 분야	7 교통
3 금융	8 보안
4 보건	9 정부업무
5 음식관련	10 제조업 등



필수노동자: 정책사례 3. 영국

- ❖ (영국) 정부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8개 필수종사자 직업군을 발표하고, 필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시설의 대면 교육 허용, 백신 우선접종 계획 수립 등 우대정책을 시행
- ❖ 일부 지역에서 돌봄 또는 보건분야 종사자에 대한 정책 수당 지급
 - 돌봄 종사자(웨일즈), 돌봄·보건 종사자(스코틀랜드)를 대상으로, 1인당 500파운드(한화 약 78만원)의 일회성 수당 지급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8개 필수종사자 직업군]

	필수 분야		필수분야
1	보건·사회복지	5	식료품 및 필수재화
2	교육 및 보육	6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3	핵심 공공서비스	7	교통 및 항공
4	정부 행정 부문	8	가스·전기·수도·통신 등 공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필수노동자: 정책사례 4. 대한민국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필수 종사자 분야(20.12.14. 대책 관련)

- ❖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20.10월)하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을 발표 → 보호가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명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호, 인력충원, 처우 및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
- ❖ 특히, **처우수준이 낮고 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돌봄종사자등에 한해,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50만원의 정책 지원금 지급**
 - 방문·돌봄종사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노인맞춤돌봄,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산모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초·중·고 방과후 강사 등
 - 정책지원금: 해당 분야에서 지난 1년 내 월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이 6개월 이상이고, 소득이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급

	필수분야		필수분야
보건 의료	의료시설 간호인력	운송	버스기사
	의료시설편견의료인력(민간)		대리운전기사
	정신건강복지센터사례관리자		유통관련 배송기사
	방역소독인력(공공/민간)		대형화물차주
돌봄	요양보호사	환경 미화	택배기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배달기사
	장애아돌봄지원사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 도우미		환경미화원(직/공영)
	아이돌보미	기타	환경미화원(위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원
	보육교사		재활용품 선별원
	노인돌봄종사자		클러스터상담원
	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초·중·고 방과후 강사		



필수노동자: 정책사례 4. 대한민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 주요내용

- (보호·지원 범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❶감염·산재위험에 노출, ❷과로·취약한 근무여건, ❸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등 어려움에 노출된 경우

구분		주요내용
총괄대책		필수노동자 방역 지원, 맞춤형 건강진단 지원 등, 고용·산재보험 확대 및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추진 등
분야별대책	보건의료	의료인력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 방역소독요원 보호지침 마련 등
	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민간돌봄서비스체계 제도화(사회서비스원법·가사법 제정), 방문돌봄종사자 등 지원금 지급
	운송서비스	대리·이륜차 배달기사 등 과도한 비용부담 관행(보험료, 사고책임 등) 개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 등
	환경미화	의료폐기물 재활용품 등 수거·선별지원금 인상, 노후시설 개선 및 건강진단 확대 등
	기타(콜센터)	집단감염 등 취약 콜센터 대상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

❖ 미국·캐나다는 각각 CARE act에 기반해 조성한 기금과 필수노동자 지원프로그램(EWSP)를 활용하여, 주정부가 주관하는 형태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실시함

❖ 한국·영국은 중앙정부가 공적 지원 패키지를 설계하고 필수노동자에게 우선제공 하거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계획·실행함. 일부 지역 및 분야에 한해 소득보조를 실시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 2020년 필수노동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필수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한 시점은 '20.3월이나 대책은 '20.12월에 비로소 마련되어 위험시기와 정책지원 시기 사이 시차가 큼** → 제도와 지원의 지체



III. 국내 재난 대응 및 종사자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 재난 발생시 대응·복구 등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
 - 대응조치(제6장) :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이동자제 권고, 학교 등 휴업·휴교, 대피 명령, 피해시설 응급 복구, 긴급구조 등
 - 복구조치(제7장) : 피해조사 및 복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정 및 보상 등
 - ❖ **(안전관리기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관련 계획을 심의(제9~13조)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를 소집(제14~17조의3)
 - ❖ **(종사자 등 치료·보상)**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명령을 받거나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부상, 장비 등의 고장·파손 등에 대한 치료 및 보상 실시(법 제65조)
- 재난의 예방·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과 안전관리기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 정하는 재난대응 등 조치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난상황에서 사회의 기본기능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필수업무)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률

-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최저 기준을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등*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산재보상보험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건강·보건 기준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의 발생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분야(필수업무)에 대하여 신속한 보호 및 지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고,
-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적이어서,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다양한 계약형태를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 ❖ **(현황)** '20.9.10. 서울시 성동구를 시작으로 34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21.2월말 현재)
- ❖ **(주요내용)** 필수노동자의 정의 및 구체적인 범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화·서비스·수당 등 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
-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관리기준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



IV.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검토



발의 법안

- '21.3.8.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제정안은 총 5건으로, 대체로 필수노동자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4개 부분으로 구성

구분	민형배 의원안	김영배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임종성 의원안
법률(안) 명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노동자 보호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대면업무, 근기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대면업무,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지정시기	평시 지정 (대통령령)	평시 지정 (대통령령+위원회 의결)	평시 지정 (위원회 의결)	재난발생 시 (위원회 의결)	재난발생 시 (위원회 의결)
지원계획 수립·시행	정기·상시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1년)	정기·상시 (기본계획 3년, 시행계획 1년)	정기·상시 (기본계획 3년, 시행계획 1년)	재난발생 시	재난발생 시
위원회 구성 (정부 외)	대통령령 위임	필수노동자대표자, 전국단위 노조 등	필수노동자대표자, 전국단위 노조 등	전문가, 대통령령 위임	전문가, 전국단위 노조·사용자 단체
국가의 지원	건강 보호, 처우개선 및 상담제공	건강 보호, 처우개선 및 상담제공	건강 보호, 처우개선 및 상담제공	건강 보호, 처우개선 및 상담제공	건강 보호, 처우개선 및 상담제공
		협회 지정·공제사업 지원(주체:고용부장관)	협회 설립·공제사업 수행(주체:필수노동자)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행정지원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행정지원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행정지원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행정지원
		우수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평가	우수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평가		우수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평가

1. 필수노동자 정의

- ❖ **(제정안 내용)**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필수업무(업종)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로 규정하나,
 - 추가적으로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일 것을 요하는 경우(이해식 의원안)
- **(검토)** 감염병 상황에 국한할 경우 대면업무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동 법률안은 향후 다양한 **재난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면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일 것으로 생각됨
- ❖ **(제정안 내용)** 대체로 필수노동자(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는 노무제공자 전체로 규정하나,
 - 필수노동자(필수업무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이해식 의원안)
- **(검토)**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이 아닌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필수노동자 지정 및 지원

- ❖ **(제정안 내용)** 민형배·김영배·이해식 의원안의 경우,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평시에 필수노동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 또는 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반면, 송옥주·임종성 의원안의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해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돌봄분야 등 각국이 공통적으로 필수업종(업무)에 포함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식품의 제조·유통, 농업, 건물관리 등 국가 및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필수노동자의 범위가 일률적으로 합의되기 어렵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지진·홍수·대형화재·원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을 필수업종으로 사전에 지정하고 관련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재난대응을 위한 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아울러, 필수업종에서 배제된 업종 종사자들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 이를 사전에 지정할 경우, 필수업종과 소위 '비필수업종'으로 남겨진 분야간의 갈등 가능성이 높음
- ❖ **(제정안 내용)** 필수노동자 지원과 관련하여, 김영배 의원안은 정부로 하여금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협회를 지정하고 공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식 의원안은 필수노동자가 협회를 구성하고, 공제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개별 업종별로 협회를 구성하고 자조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나, 이와 별개로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협회를 구성하고 공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가입범위나 사업운영을 위한 재원 부담 주체 등이 사전에 정해져야 함.
 - 필수업종(업무)의 **범위는 재난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평시에 업종을 확정하여 협회를 구성하거나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됨. **대표성 문제**도 복잡.



3. 이해당사자의 지원위원회 참여

- ❖ **(제정안 내용)**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필수노동자 지정 및 지원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측 대표와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명시
 - 다만, 김영배·이해식 의원안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와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규정
- **(검토)** 지원위원회는 필수노동자의 지정과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로, 원칙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임**
- 다만, 필수업종(업무)의 범위가 재난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유동적이므로,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할 경우 누가 참여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절함 → 위원회가 필수노동자를 지정한다면 필수노동자가 사전에 동의되어야 하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논리적 모순**
- 아울러, 필수노동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참여만을 규정하기 보다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참여를 함께 명시하여** 이해당사자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V.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입법의 방향



‘(재난기)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입법의 방향

- ❖ 코로나19로 확인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의 다양한 재난상황을 염두하고 필수업무 및 관련 종사자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향
 -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필수업무의 범위를 사전에 정했을 경우, 현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될 필요
 - 요컨대, ‘필수노동자’라는 용어는 노동자를 필수적인 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대상을 노동자에 한정하고 있어 보다 적절한 용어 고민 필요 → ‘재난기 필수업무종사자’ 등의 **상황 한정과 범위 개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 (개인적으로) 앞서 검토한 바와같이 ‘**상황요건**’과 ‘**직무요건**’을 동시에 고려해 ‘(재난기) 필수업무종사자’를 정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근거를 법안에 포함 필요.
- ❖ 현 시점에서 다양한 재난의 형태에 따른 필수노동자의 범위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에 정하기보다는,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에 대한 **정부·자치단체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부터 이 법률안에서 정하는 지원위원회를 통해 정부 대책의 시행 과정 및 결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다면, 향후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제정은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



권 오 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1. 필수노동자 보호의 필요성

○ 공청회의 목적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중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배달 업무 종사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수업무의 범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국가·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한 의견 청취.
- COVID-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제정의 취지에 공감함.
-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의 잠정적인 보호나 지원이 아니라, 필수업무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인식 위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보호되어야 함.

○ ‘재난’의 법적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湍),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개념임.
- 국가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짐. 이러한 국가의 책무는 공행정 전달체계만으로 수행이 어려움.
- ☞ 에센셜 워커(essential worker, 이하 편의상 “필수노동자”라고 함)의 보호와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의 수행에 조력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재난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필수업무의 범위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구체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등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난 상황의 다양성에 적시에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 법률에서는 **(i) 필수업무의 개념, (ii) 구체적 재난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을 위한 수권, (iii) 필수노동자 지원 등의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 재난 상**

황에서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입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2. 관련 법률안의 비교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법안명	주요내용
2108589 2021-03-05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 종성의원등 11인)	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안 제2조) 1)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의함. 2)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u>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함.</u>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무여건 개선 노력 및 고충해결, 심리상담 지원체계 확충 등을 하여야 함. 다. 국가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u>심의·의결함.</u> 2) 위원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정부·자치단체 대표, 전국단위의 노·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민간 전문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이 됨. 3)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함. 라.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1) 해당 지역의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정하고,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음. 2)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는 해당 지역에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함. 3) 지역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법안명	주요내용
		마.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역할(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이 종료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 노동환경 등에 대한 조사·평가 등을 하여야 함. 3) 국가는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4)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성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관계 행정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2107345 2021.01.1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이해식의원 등10인)	가. 이 법은 재난의 대응·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면 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무수령자 및 국민의 책무와 필수노동자의 권리·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7조).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노동자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협회의 설립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2107079 2020.12.3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 옥주의원 등 13인)	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안 제2조) 1) “필수업무”를 <u>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u>로 정의함. 2) “필수업무 종사자”를 <u>필수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u> 정의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무여건 개선 노력 및 고충해결, 심리상담 지원체계 확충 등을 하여야 함. 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u>심의·의결함</u>. 2) 위원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법안명	주요내용
		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정부·자치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이 됨. 3) 위원회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함. 라.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1) <u>해당 지역의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정하고,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음.</u> 2) 지역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3) 지역별 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함. 마.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역할(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알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이 종료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 노동환경 등에 대한 조사·평가 등을 하여야 함. 3) 국가는 지원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음. 4)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2105637 2020.11.23.	필수노동자 보호법안(김영배의원 등 17인)	가. 이 법은 <u>재난의 대응·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면 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u>(안 제1조). 나. ‘필수노동자’를 <u>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포괄함</u>(안 제2조). 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필수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수업종의 범위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필수업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책무로서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고 추진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며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의 지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법안명	주요내용
		원업무 수행에 있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함(안 제8조). 바. 정부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3년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가 심의함(안 제9조). 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 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고 민·관 공동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부위원장은 정부 측과 민간 측 2인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도 정부 측 위원과 민간 측 위원의 수가 같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차. 시·도지사는 시·도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시·도별 기본계획과 함께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안 제13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일정 성과를 거둔 민간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거. 소비자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있어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행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16조). 너.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수노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 관련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함(안 제18조). 더. 필수노동자의 효과적인 보호,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필수업종의 대표성을 가지는 필수노동자 협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수노동자 협회가 필수노동자의 지속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2104989	필수노동자	가. 이 법은 감염병의 전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법안명	주요내용
2020.11.05.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 형배의원 등 11인)	<u>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u> 나. 필수업종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물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법률안에 대한 검토

가. 필수노동자의 범위 관련

○ 필수노동과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의 일반적 정의규정

(송옥주 의원안)

- **필수업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
-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이러한 정의는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정의로 생각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필수업무 노동자(essential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노무를 제공'한다는 표현은 민법의 고용계약에서 빌려온 표현으로 추측됨.

(대안)

- **필수노동자**: 필수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 방식 관련

- 코로나19 상황에서 택배, 돌봄 등을 필수노동으로 생각하게 된 것처럼 필수노동의 범위는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여, **재난 발생 시점에 어떤 업종이 필수노동에 해당할 것인지 미리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필수노동의 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할 경우 개별적 재난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여 각 상황에 상응하는 필수노동의 범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부(고용노동부장관)가 필수노동의 범위를 고시하는 등의 방안이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됨.

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 관련

(송옥주 의원안)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위원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정부·자치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이 됨.

※ 총리실 산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위원회의 지위)

-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로 규정함.
-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노동의 범위를 고시하는 등의 방안이 재난에 대응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됨.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필수노동자 지원 등의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 제고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임.
- 민간 전문위원 외에 대표성 있는 노사단체 추천인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됨(민주적 정당성 제고).
-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15인보다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바. <u>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u>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하. <u>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u>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나. <u>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u>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i) 필수노동자의 범위와 (ii) 지원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라. 필수노동자의 책무 관련

○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률에 필수노동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 상 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검토 의견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노동법)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 제정 필요성

-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이 치명적인 코로나 감염이라는 위험을 감내해서라도 최소한도로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노동수행자를 필수노동자라고 할 수 있음
-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재난 시마다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업무수행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함
- 코로나발생 1년을 지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종전부터 있어왔던 기업규모 간, 특히 디지털 활용 여부에서 노동시장의 불균형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²⁾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요 내용도 넓게 보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는 취지 내지 기능을 포함할 수 있음
-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는 원격/재택 근무와 같은 디지털 혜택 향유에 대한 고용형태 차이, 학력

1) 법률명칭이 적정한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편의상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칭키로 한다.

2) <https://www.oecd.org/coronavirus/en/themes/inclusive-recovery>: Focus on an inclusive recovery. covid19으로 교육 불평등, 청년 여성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불평등, 디지털 양극화 등을 극복 내지 회복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차이, 남녀 차이 등과 같이 보호 필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보편적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제도 개선에 해당하는 것임

- 비록 필수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 개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기준제도 개선차원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향은 사용자도 손을 쓸 수 없는 중단된 필수노동자의 노무제공이 가능토록 국가로부터의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미국의 Heroes Act 등도 비록 고용지원금과 실업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노동보호정책보다는 특별한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성격에 더 가까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법률 방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단 없는 노무제공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법률 목적 및 기초 개념

1) 법률 목적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도의 취지나 배경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임
- 감염병 전염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무릎 쓰고서라도 우리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종사해야만 하거나 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종사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종사자가 안정적으로 해당업무를 지속할 있도록 필요한 보상 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이런 목적을 가지는 법률 제정 계기가 비록 코로나사태로부터 연

유한다 하더라도 향후 예상치 못한 재난 시 필수노동자 업무유지를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므로 이 법은 모든 형태의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법률 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특별히 감염병 예방, 대면 업무 수행 등과 같은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 법 제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잘 반영되겠지만, 당장 대면업무 아닌 필수업무도 제외되는 점도 있고(택배 등), 향후 예측치 못한 다양한 재난이 등장할 경우 이 법을 개정하거나 또 다른 관련법 제정이 반복되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재난시 그때마다 우리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업무 지원을 포괄할 수 있는 개방규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필수업무종사자) 개념

- 기존 법령으로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정하고 있음.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정함.
- 필수유지업무 정의 규정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감염병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업무도 포함될 수도 있음. 그러나 필수업무는 필수유지업무의 전제인 필수공익사업과 일치하지도 않고, 공중의 일상생활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생산업무 지속에 필요하고 중요한 일부 기능인 돌봄노동종사자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필수업무는 필수유지업무보다 더 넓게 표현될 필요가 있음

- 필수업무 정의에서 구체적인 예시로서 대면업무나 물류, 돌봄, 운송 등과 같은 구체적인 업종을 열거하는 것은 취지를 잘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재난시마다 우리 사회의 기능이 유지되는데 보다 넓고 다양한 기능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수업무는 추상적 광의의 의미로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필수노동자 내지 필수업무종사자 개념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자로 한정될 수는 없음.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종사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특고 등 다양한 노무제공방식의 종사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특고종사자 등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규정 방식을 사용해야 함.
- 다만 이를 필수노동자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굳이 따지자면 노동자와 근로자 개념이 사실상 동등한 것임에 비추면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도 포괄할 수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사용법이라 판단됨³⁾
- 또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규정에서도 필수업종 정의와 같이 코로나 사태를 염두에 둔 업종유형이 열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재난 대응에 더 적합한 방식이라 생각됨

3) 필수업무 지정 방식

- 필수업무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미리 명시적으로 정해져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음.

3) 이렇게 볼 경우 법률 명칭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다는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사용법일 수 있음

- 그러나 필수업무의 사전지정 방식은 향후 예측치 못한 다양한 재난을 포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설령 필수업무를 법령에 미리 정해 두더라도 새로운 재난 발생 시 그 때마다 새 필수업무를 추가 지정하는 절차가 소요된다는 점 등에 비추면 보다 간이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 이런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법령에서 필수업무를 지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필수업무 지원 관련 위원회를 구성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재난시마다 필요한 지정행위를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임

3. 보호 및 지원 내용

1) 보호 및 지원 범위

-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가 감염위험은 물론 사회적 폐쇄에 따른 업무상실(고용탈락)이 사용자의 책임도 아니고 노동자의 책임도 아니므로 이들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법의 지원 내용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한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과는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제도 정책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정책 수단이 있으므로 이들 정책일반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사 누구의 책임도 아

니면서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한 노동력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하고 그러한 근거 규정을 두는 취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 보호 및 지원 내용 명시, 위원회 구성 등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내용도 이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장점은 있지만 향후 등장하는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는 단점도 있음
 - 다양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내용은 (위에서 본) 필수업무를 재난시마다 지정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신속하게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필수업무 지정과 필수업무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대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관련 경험있는 전문가 이외에 가칭 필수노동자 협회나 노동대표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필수업무 종사자 대표 참여를 통해 종사자 실태에 적응하는 지정과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자칫 필수업무 지정이나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재난 시 사회적 기능 유지라는 필요 최소한의 목적이라는 객관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아니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포섭되기 위한 교섭 내지 흥정의 방식으로 전개될 우려도 있음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정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종사자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더라도 필수노동자 내지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종사자 그룹들의 주장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시스템은 필요함

추 광 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 검토의견

① ‘재난’ 개념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필수업무종사자(또는 필수노동자)’ 범위를 사전에 지정하고 있는 체계가 적절한 지 검토 필요

-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재난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형태의 재난을 포괄하고 있음
- 관련 법안들은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상 재난(제3조 제1호)으로 규정

◆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의 종류·형태에 따라 재난의 피해방지, 예방에 필요한 업무종사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전에 적용 대상 종사자를 규정해 두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음

② 법 적용 대상을 업무상 직접적 대면 근로가 불가피한 업무 종사자로 분명히 할 필요

- 현행 재난안전법은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과 피해계층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타 법률로 지원이 어렵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법 제정의 취지임을 감안해야 함
- 제정법은 비대면이 강조되는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 대면 업무 수행이 불가피한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둘 필요
 - *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사전에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기보다는, 재난의 형태에 따라 대응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

③ 사업자(노무수령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법 제정의 취지가 재난 발생시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인 만큼, 사업자(노무수령자)에 대한 규제를 제정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필수노동자와 사업자(노무수령자)간 근로관계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노동관계법 체계에서 규율할 필요
 - * 일부 법안이 고용조건 개선, 고용안정성 강화 등 노무수령자의 책무를 규정하거나,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 필요

④ 필수노동자위원회는 의결기구보다는 심의기구로 운영이 적절

- 위원회에서 필수업종 지정, 필수노동자 범위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정책 결정의 혼선이 야기될 우려

⑤ 기타 검토사항

- 일부 법안은 기본계획(3년 또는 5년)과 시행계획(1년)의 정기적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의 형태나 피해계층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기적인 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적절한 지 의문

<추가 의견>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보완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 대응체계를 상세하게 규정
 - 재난 종류(제3조제1호)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사회재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구성

- 1장 총칙(정의, 국가국민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등)
- 2장 안전관리기구기능(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등)
- 3장 안전관리계획(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집행계획 등)
- 4장 재난 예방(재난예방조치, 긴급안전점검, 안전환경 지원 등)
- 5장 재난 대비(위기관리 매뉴얼, 재난안전통신망, 재난대비 훈련 등)
- 6장 재난 대응(재난 선포, 응급조치, 긴급구조 등)
- 7장 재난 복구(피해조사, 복구계획, 재난지역 선포·지원, 보상 등)
- 8장 안전문화 진흥(안전문화 진흥 시책, 안전정보 구축·활용 등)
- 9장 보칙(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정보 등)

-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처는 전 부처의 체계적 대응이 중요
 - 새로이 제정법을 만들 경우,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규율되고(중앙안전관리위원회),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제정법에 의해 규율되게 됨(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여러 부처의 정책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전 부처 통할

- 필수노동자보호법 구성이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유사해 추가·보완 규정을 통해 통합 규율 가능

* 필수노동자보호법 구성: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 책무,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등

